

case
1

강철 금속 봉

요약

사례명	강철 금속 봉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8207 (2021.02.02.)
사실관계	대만산 S45C 탄소강 봉을 미국으로 수입 후 절단, 나사 가공, 오목 스탬핑, 산화 처리하여 코킹 건용 부품으로 사용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된 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 처리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유지됨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¹⁾

사 례 명 [강철 금속 봉]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8207 (2021.02.02.)

사실관계

요청자 Newborn Bros. Co. (대리인: Michael K. Tomenga)

제품명 • 코킹 건용 강철 금속 봉(S45C, JIS G4061 기준)

제품 구성 • 원형/사각형/육각형 탄소강 봉(대만산)

용도 • 코킹 건 내 실란트/접착제 등 재료 압출용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대만에서 열처리된 탄소강 봉 미국으로 수입
 2. 미국 내 후속 가공
 - 18~24인치 길이로 절단(cutting)
 - 양 끝 나사산 가공
 - 오목한 자국 스탬핑으로 로드 제한 기능 부여
 - 흑색 산화처리로 부식 방지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야 함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이나 폭으로 절단하는 행위가 물품을 특정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284041*

사례 중국에서 한국산 강관을 수입하여 절단, 나사 가공, 세척, 방청 처리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한국에서 제조된 수입품은 파이프이고, 중국에서 가공을 거친 최종 제품 역시 파이프이므로,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4186*

사례 멕시코에서 한국산 강철 파이프를 수입하여 절단, 나사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강철 파이프를 절단, 나사 가공하는 수준의 작업은 한국산 강철 파이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318*

사례 불가리아산 황동 스트립을 독일에서 한 차례 냉간 압연하여 두께를 감소시키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함

판정 독일에서의 가공은 스트립의 화학적 또는 금속학적 성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두께를 감소시키고 표면을 매끄럽고 윤이 나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4716*

사례 일본산 스테인리스 시트를 싱가포르로 수입하여 부식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No.8 미러 마감 폴리싱 작업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싱가포르에서의 폴리싱 작업은 강판의 특성 중 하나를 변화시킨 것일 뿐, 전체적인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변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

판정 결과

☑ 위에 열거된 CBP의 판정 사례와 같이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된 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 처리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유지됨

결론

✓ 미국에서의 후속 가공 공정(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처리)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II 시사점

- CBP는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순히 절단하거나 표면 처리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명칭, 용도, 성질로 변화시킬만한 광범위하거나 전문적인 공정이 수행되어야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8207 (2021.02.02.), <https://rulings.cbp.gov/ruling/H308207>
- CBP Ruling NY N284041 (2017.03.31.), <https://rulings.cbp.gov/ruling/N284041>
- CBP Ruling HQ 734186 (1991.10.24.), <https://rulings.cbp.gov/ruling/734186>
- CBP Ruling HQ W968318 (2006.10.02.), <https://rulings.cbp.gov/ruling/W968318>
- CBP Ruling HQ 734716 (1992.11.27.), <https://rulings.cbp.gov/ruling/73471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